

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 1 조 <생 략></p> <p>제 2 조 (용어의 정의) ① <생 략> 1~ 4 <생 략> 5. "개인신용대출"이라 함은 무담보 순수 신용 가계자금대출 (건별대출,장기카드대출(카드론) 등)을 의미합니다. 다만 현금서비스의 경우 개인신용대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.</p> <p>6 ~ 8 <생 략> ② <생 략></p> <p>제 3 조 ~ 15 조 <생 략></p>	<p>제 1 조 <좌 등></p> <p>제 2 조 (용어의 정의) ①<좌 등> 1 ~ 4 <좌 등> 5 "개인신용대출"이라 함은 무담보 순수 신용 가계자금대출 (건별대출,장기카드대출(카드론) 등) 및 비상금대출(서울보증보험(주)의 보증조건부 300 만원 이하의 하나은행 마이너스통장대출)을 의미합니다. 다만, 현금서비스의 경우 개인신용대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.</p> <p>6 ~ 8 <좌 등> ②<좌 등></p> <p>제 3 조 ~ 15 조 <생 략></p>	<p>대출이동시스템 상환 대상 대출 추가</p>

■ 시행일 : 2023 년 10 월 4 일

■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여부 : 미적용